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국토교통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주택청약시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방법 등 정정 알림

1. 주택기금과-3769호('18.5.31)의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, 주택청약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방법을 알려드렸으나, 당첨자 명단과 달리 예비입주자 명단은 공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번이 포함된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(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(제18조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)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당첨자 명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 등의 공개는 금지되지만 예비입주자 명단은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공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3. 또한, 공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거나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,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해당 주택의 동·호수를 공개한 후 동·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·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.다만,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사업주체에서 예비입주자에게 미계약물량 등을 공개하지 않고 동·호수 추첨을 실시하여 비리발생(물량 빼돌기기) 의심 상담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동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장(주택정책과장),공동주택과장,주거사업과장,주거재생과장,재생협력과장,대구광역시장(도시재생과장),도시정비과장,건축주택과장,인천광역시장(주거환경과장),지역개발과장,대전광역시장(주택정책과장),인천광역시장(건축계획과장),광주광역시장(도시재생정책과장),건축주택과장,울산광역시장(건축주택과장),도시개발과장,도시창조과장,대전광역시장(도시재생과장),도시정비과장,경기도지사(주택정책과장),도시주택과장,도시정책과장,도시재생과장,강원도지사(건축과장),경기도지사(공동주택과장),세종특별자치시장(건축과장),충청북도지사(건축문화과장),충청남도지사(건축도시과장),전라북도지사(주택건축과장),경상북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,경상남도지사(건축과장),제주특별자치도지사(디자인건축지적과장),도시재생과장,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(주택과장),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,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,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,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,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,부산.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,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,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,한국주택협회장,대한주택건설협회장

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주택기금과 과장

협조자

시행 주택기금과-5543 (2018.08.08.) 접수 주택정책과-13736 (2018.8.8.)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실 주택기금과 / http://www.molit.go.kr
전화 044-201-3343 /전송 044-201-5530 / kbruce74@molit.go.kr / 비공개